

## 종 법(宗法)

### 감찰원법(監察院法)

제1조 중헌 제81조에 의하여 감찰의 조직 및 의사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감찰원에는 원장 및 호계부 조사부 감사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종정의 인가를 받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감찰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며 감찰원의 임원은 감

제4조 호계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승<sup>려</sup> 비위 및 위계질서에 관한 사항
2. 종지 종풍 위배 및 해종행위자 척결
3. 타부서에서 위임된 집행 사항
4. 기타 호법부에 속한 사항

제5조 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종행위에 대한 내용 조사
2. 장계회부에 대한 사전 조사
3. 상벌에 대한 사전 조사
4. 기타 조사부에 대한 사전 조사

제6조 감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단 각종 사업에 관한 회계 감사
2. 세입 세출에 관한 감사
3. 각종무기관 및 직할시·도 종무원의 감사
4. 징계에 대하여 제소한 사항 원심 확정에 관한 건
5. 기타 감사부에 관한 사항

제7조 감찰원장은 종정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하며 어떠한 종무기관에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

제8조 감찰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조 감찰원장 유고시 수석 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피징계인은 감찰원에 출석하여 제소사실을 듣고 자신에 대한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 피징계인은 처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재심청구가 검찰원에 도착되면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정의 인가를 받아 별도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검찰원장 및 임원은 타부서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5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